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7.1.(수) 12:00	배포	2026.7.1.(수) 7:30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 호텔업 등급결정 고시 개정, 개인정보 보호 가점·감점 지표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우수 호텔에 최대 10점 가점, 행정처분 호텔에는 감점 부여

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보호활동에 적극적인 호텔은 호텔업 등급평가시 가점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2026.7.1. 시행)을 통해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가점·감점 지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호텔업은 국내·외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숙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에 이번 고시 개정을 적극 요청하였다.

이번 문체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에는 호텔 등급평가 **가점 항목**으로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감점 항목**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조치'**가 추가되었다.

등급평가 가점조건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 4가지 활동이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 이행한 경우 10점, 2개 7점, 1개 4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 가점 지표 】

4-1. 가점 항목	배점	평가배점
가.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ISMS-P 인증 취득	10	ㅇ3개 이상(10) ㅇ2개 (7) ㅇ1개 (4)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등 발생 시에는 감점 10점이 부여된다.

【 감점 지표 】

4-2. 감점 항목(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배점	평가배점
다. 영업상 행정조치 여부 ※ 위생 점검, 소방 점검, 노사분규, 중대재해,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영업상의 행정조치(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	-10	ㅇ발생 (-10)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별 자체 평가·심사 기준에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 보호 활동이 등급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예방조정심의관	책임자	과 장	황지은 (02-2100-3081)
	자율보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지관우 (02-2100-308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